

2024년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

대전소재 중소기업 등의 특허·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.

2024. 8. 1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, (재)대전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: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지원유형 및 규모

○ 지원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

○ 지원내용: 총 사업비의 70% 지원

구 분	지원방식	지원 유형	모집방식
분쟁대응	개별대응	상표무단선점 대응	수시 (Fast Track*)
		위조·형태모방 대응	
권리보호	개별대응	일반제조 분야 IP 보호	정기
		콘텐츠 분야 IP 보호	

* (Fast Track)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

□ 지원 대상(이하 '지원기업'으로 통칭)

○ 개별대응: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*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

* (수출기업) 직·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* (수출예정기업) 현지시장조사, 수출계획, 거래처 확보, 계약 체결, 현지 승인 획득,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([붙임1]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 필요)

**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
- 단, '콘텐츠 IP 보호'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(예정) 문화콘텐츠*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

* (문화콘텐츠)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(예술성, 창의성, 오락성, 여가성, 대중성)가 체화된 콘텐츠

2. 지원 상세

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

☐ 분쟁대응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과업기간	지원조건 (필수서류)
개별	상표무단선점 대응 (Fast Track)	▶상표브로커,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무단선점 입증
		▶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,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
		▶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* 분쟁 대응전략 지원 *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			피해 (의심)입증
	위조·형태모방 대응	▶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,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피해 (의심)입증
		▶위조·형태모방 대응 이후,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			역공격 입증

*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하며, '공동대응' 사업비는 협의체 당 기준

☐ 권리보호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과업기간	지원조건 (필수서류)
개별	일반제조 분야 IP 보호	▶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	12백만원	최대 3개월	국내외 판매현황 입증
		▶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 신청 대응전략 지원			이의신청 청구서
	콘텐츠 분야 IP 보호	▶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,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	40백만원	최대 3개월	제작 또는 유통자료
		▶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	12백만원		
		▶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 신청 대응전략 지원			

*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

나. 지원 범위

□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

구분	정부 지원 비율 (총사업비 중)		수혜자 부담 비율	
	국비(보호원)	지방비(대전TP)	현금	현물*
소기업	50%	20%	10% 이상	20% 이하
중기업			20% 이상	10% 이하

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□ 연속·동시 지원

- 지원대상: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·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- 지원범위 : 연속(최대 3년)·동시(연 2회)지원 가능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

구분	정기모집		수시모집(Fast Track)	
모집 기간	6차	'24. 8. 1.(목) ~ 8. 26.(월) 18:00	6-1차	'24. 8. 1.(목) ~ 8. 16.(금) 18:00
			6-2차	'24. 8. 17.(토) ~ 8. 23.(금) 18:00
결과 통보	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		모집완료 후 7일 이내	
비고	• 정기모집은 '(개별)상표무단선점 대응'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• 수시모집(Fast Track)은 '(개별)상표무단선점 대응' 유형에 한하여 적용 •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, 매월 2회(1일~15일, 16일~30일까지) 신청·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•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•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-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			

□ 신청 방법

-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-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6] 참조
-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
- *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

○ 신청기업(국내기업)
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일반 신청		제출 방법
		필수	해당 시	
신청서	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2]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2] 참조	○		온라인 입력
추가 제출 서류	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] 참조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	2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* Fast Track 해당시 3개월 초과 인정	○		
	3. 대상제품 설명&판매자료 [붙임1] 참조 *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	○		
	4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 [붙임1] 참조		○	
	5.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	○		
	6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	○		
	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] 참조		○	

○ 수행기관
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필수	해당시	제출방법
수행 기관 신청 서류	1. 사업수행 신청서 [붙임3] 참조	○		제출완료시 자동생성
	2.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3] 참조	○		온라인 입력
	3. 산출내역서	○		
	4. 사업수행 제안서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	5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	○		

※ (발표자료 제출) 콘텐츠 분야 IP 보호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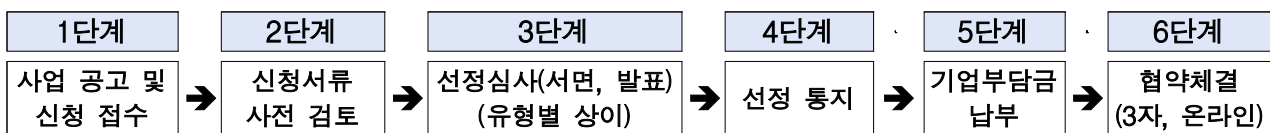
- 수행기관 지정: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

참고 사항	•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(특허법인 등)는 '23-24년 특허/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('23년에 등록한 수행기관은 '24년에 가입 無) •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(S, A 등급) 목록 제공 가능(kbrand@koipa.re.kr로 요청) •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,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 필요 •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
--------------	--

4. 세부 운영계획

가.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([붙임1] 참조)

□ 선정 절차



□ 선정 기준

- 신청기업 심사: 선정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
- 수행기관 심사: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,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

수행기관 분류 기준	•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'80점 이상 : 수행적합', '80점 미만 : 집중관리 대상'으로 구분 • '집중관리 대상'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'지정 수행기관 유지·변경 요청서'를 요청하고,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(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)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가산점: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[붙임1] 참고

□ 선정 결과 확인

-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'지원기업 협약관리'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

□ 협약 체결

- 기업부담금: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,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참고사항	•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(현금) 납부기간 연장 가능 • '공동대응 협의체'는 기업부담금(현금) 부담 없음
------	--

- 협약방식: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,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

나. 신청 시 유의사항(필독)

□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

- ① 휴 · 폐업 기업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 합의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 ·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
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·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)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·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(NPE 권리행사 유형은 지원가능)
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□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

-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을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
-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선정 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)
- 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
- ⑦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⑧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2년 연속 80점 미만인 전문기관이 동일 기술/수행분야에 신청한 경우
- ⑨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< 기업 비밀정보 보호 >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, 국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감사,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'비실명화' 후 제공할 수 있음

□ 기타 주의사항

- (사업참여 제한)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
 -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 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(최대 3년)
 -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
 - *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
 -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(영구)
 - *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
 -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
- (해외 수행기관)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,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(부가가치세법 제52조)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
- (위탁정산)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
 - *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,000원(VAT 미포함)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, 추후 별도 안내
- (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)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- (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)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·해지 가능
- 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
 - 정부지원금,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

-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 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특허청, 변리사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- (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)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(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)

다.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

	정기모집	수시모집(Fast Track 적용) (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유형)
신청접수	○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을 통한 온라인 신청 ○ 월 1회 접수 마감 * 통상 매월 25일 전후 접수 마감(공고문 참고)	○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
기업·수행기관 선정심사	○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○ 심사방식: 개별대응(콘텐츠 IP 보호 제외) → 서면심사, 공동대응 및 콘텐츠 IP 보호 유형 → 발표심사 ○ 선정결과 개별 통지	
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	○ 기업 선정 결과 통지(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) ○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○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단,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최대 2주이내로 연장 가능	○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○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
3자 협약체결	○ 기업-수행기관-보호원 3자 협약 체결	
선금 지급	○ 정부지원금의 70%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(수행기관 선택사항)	
지원사업 진행	○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○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	
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	○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(필수) ○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(향후 별도 공지)	
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	○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○ 既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(필수) *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	

라.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

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

구분	세부 분야	담당자 연락처
사업내용 (유형 문의 등)	개별대응 총괄	02-2183-5896
	(개별대응) 상표무단선점 대응 (Fast Track)	02-2183-5895
	(개별대응) 콘텐츠 분야 IP 보호	02-2183-5893
행정	신청 및 선정절차	02-2183-5892
	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	
	온라인 신청(시스템)	02-2183-5893
	정산 관련	02-2183-5879
기타	이메일 문의	kbrand@koipa.re.kr
대전 테크노파크	대전 기업 상담	042-930-4813

온라인 사업안내	• (일시) 상시 게재 • (게시처)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(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wefo4CEIKzvNXCFiuaR52g), K-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(https://www.ip-navi.or.kr/kbrands)
온라인 지원사업 신청	• 사업관리시스템(IP-NAVI): 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 (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)

[붙임1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

[붙임2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(기업)

[붙임3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(수행기관)

[붙임4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

[붙임5]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

[붙임6]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